*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4서식] <개정 2020. 9. 25.> 안장시스템(www.ncms.go.kr)

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안장(이장·영정봉안·위패봉안)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| 30일 |
| 신청인 | 성명 | 생년월일 (성별) | 안장대상자와의 관계 |
| 주소 | 전자우편주소 |
| 전화번호 | 휴대전화번호 |
|  | 성명 | 신분 | 계급·직위 |
|  | 주민등록번호 | 소속 | 군번 |
|  | 주소 |
|  | 출생지 | 사망지 | 사망일 |
| 안장 ( 이 장 · 영 정 봉안·위패봉안 · 자 연 장 ) | 안장자격 | 훈격·등급 | 사망구분 | [ ]전사[ ]순직[ ]일반사망 |
| 배우자 | [ ]있음( | 명) | [ ]없음 |  | 보훈번호 |
| 대상자 |  | [ ]봉안당(봉안담) 안치 | 안장 희망일 |
|  | 안장방법 | [ ]묘지 매장 [ ]영정봉안 |  |
|  |  | [ ]위패봉안 [ ]자연장 안치 |  |
|  | ※ 다음 사항은 이장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 |
|  | [ ]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 묘지로 이장 | 현 안장지 |  |
|  | [ ]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 | 묘비번호 | 판 | 묘역(위패)호 |
|  | (안장위치) |
|  | 이장희망일 |  |

#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장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#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(뒤쪽)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신청인 제출서류 | 1. 사망진단서ㆍ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(제6호에 따라 전사증명서 또는 순직증명서를 첨부하 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
2.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.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: 개장신고증명서 1부

나.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: 개장신고증명서ㆍ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1.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: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, 이유소명서 1부 및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2.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: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3.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: 공적서(수훈사실을 포함합니다) 및 주 요 경력서 각 1부
4. 법 제5조제1항제1호다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: 전사증명서ㆍ순직증명서 또는 경 력증명서 1부
5. 법 제5조제1항제1호아목ㆍ차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: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 서 1부(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 | 수수료 없음 |
|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| 병적증명서(무공수훈자·장관급 장교 또는 10년 및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및 군인의 경우 만 해당합니다)※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 |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|  |
| --- |
| 처리절차 |
| 신청 |  | 접수 |  | 안장대상여부 확인 |  | 안장 |

신청인

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

국가보훈처장 국방부장관

국립묘지관리소장

|  |
| --- |
| 확인 |
| 담당 | 주무 | 과장 | 기관장 |